

대학원(일반,특수) 학칙 시행세칙(2-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사업무의 수행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일반대학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군사경찰행정대학원, 상담대학원, 바이오비임상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8.13.)(개정 2010.10.26.)(개정 2012.6.4.)

제2장 입학 및 선발 고사

제3조(입학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심사
3. 전공필기 시험 (각 학과의 내규로 시행 여부를 정함)
4. 구술시험 또는 실기시험 (예능계 지원자에 한함)
5. 입학사정
6. 합격자 발표
7. 등록
8. 입학

제4조(입학지원제출서류) ①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전형료와 함께 본 대학원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입학 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4년제 대학 졸업(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1부.
3. 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5. 참모총장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사진 (반명함판 3cm × 4cm) 2매. (입학원서 사진포함)
7. 공무원 연금가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③ 박사학위과정 입학 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출신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3. 출신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4.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각1부. (해당자 에 한함)
5. 학업계획서 (소정양식) 1부.
6. 연구실적 목록 및 연구실적물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7. 공무원 연금가입 확인서 1부(해당자 에 한 함)
8.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5조(선발인원) 입학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방법 및 기준)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 심사와 구술시험에 응해야 한다.

- ② 서류심사에서는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조의 입학지원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지원자격을 심사한다.
- ③ 구술시험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별력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전공(실기)지식, 전공적성, 학업성취의욕(학업계획)을 영역별로 평가한다.
- ④ 제1항의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이외에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시행 할 수 있다.

제7조(입학전형위원) 대학원장은 본 대학원 각 학과의 강의 담당교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2인을 입학전형위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26.)(개정 2017.8.17.)

1. 서류심사(전적대학 전학년 평점평균 성적) : 60점 만점
2. 구술시험 : 240점 만점
3.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필기시험을 시행 할 수 있다.
4. 일반대학원 연구장려장학생의 경우 20점의 추가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또는 실기시험(필기시험)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입학전형위원 2인의 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평균으로 산출한다.

제9조(합격의 결정) ① 대학원장은 학칙 제49조에 의거하여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 등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계열별 재적인원 및 입학시험 성적 등을 참작하여 합격인원을 조정한다.
-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장 등 록

제10조(등록의 종류) 각 대학원의 등록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등록 : 수업년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2. 입학 등록·편입학등록·재입학등록 :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
3. 논문연구 등록 :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4. 연구생 등록 :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으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
5. 교과목 등록 :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수료자 등록 : 수료자 중 무논문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수를 위해 추가 등록을 원하는 학생(개정 2014.8.6.)

제11조(입학등록) ① 입학 합격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 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한다.

제11조의 2(수료자 등록) ① 학칙 제33조의 2에 따라 수료자는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대학 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료자 등록을 할 수 있되, 통산 1회로 제한한다.

②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료자 등록을 한 경우 등록금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 수료자 등록의 경우 휴학 할 수 없다.(신설 2014.8.6.)

제4장 교과과정 · 학점 · 선수과목 · 성적 및 수료

제12조(교과과정 편성운영)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과(전공) 단위로 학과(전공)주 임교수가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교과과정의 확정) 학과(전공)주임교수는 교과과정(안)을 그 교과과정이 시행되는 전년도 10월말까지 각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를 확정한다.

제14조(교과목 개설 및 변경) 학과(전공)주임교수는 확정된 교과과정에 의해서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안)을 작성하고 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전공)주임교수가 개설과목 변경신청서(소정양식)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학수번호부여) 각 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교과과목과 연구과목으로 구분하며, 교과과목 의 학수번호는 학과코드 3자리와 교과목 코드 3자리를 부여한다.

제16조(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 각 대학원의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0 ~ 69	0

제17조(성적인정) 성적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총 수업일의 3/4이상, 성적등급은 C°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 평점평균은 B°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8조(학점취득)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학점의 취득을 위해서는 수업시수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19조(선수과목 이수학점) ① 일반대학원에 비 동일 계열의 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는 전공에 필요한 기초과목 6학점 이상을 학부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한다.(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단, 이수해야 할 총 학점은 각 학과 내규에 따른다.(개정 2013.6.19.)

② 특수대학원의 선수과목에 이수 여부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 내규로 정한다. 단, 교육대학원은 교육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다.(개정 2007.6.14)

제20조(선수과목 인정학점) 학부(과)에서 이수한 과목이 선수과목과 동일 시 된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학과 전공주임교수가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선수과목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1조(선수과목 결정) 선수과목의 결정은 해당학과(전공)의 학과(전공)주임교수가 하며, 전공주임교수는 선수과목의 과목명을 매 학기초에 학생들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선수과목 학점) 선수과목 학점은 대학원 수료과정의 학점과는 별도로 처리하며, 대학원과정의 전공이수학점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제23조(선수과목 이수 불이행) 타 전공 출신자로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24조(교내외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① 각 대학원은 타 대학교의 대학원과 학점을 상호 인정한다.

② 각 대학원과 협정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 학위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재학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이를 승인 하였을 때에는 국내 또는 국외의 타 대학교에서 각 과정 수준이상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취득 학점은 석사과정에서는 12학점, 박사과정에서는 18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상기 각 항에서 요구된 학점인정은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0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⑤ 보건복지대학원 병원관리학과 입학자 중 병원관리자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6학점, 대한병원관리자협회에서 시행하는 장기연수과정 수료자는 4학점 범위 내에서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취득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개정 2007.8.13)

제5장 학위수여

제25조(목적) 본 학칙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34조에서 규정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응시자격 및 시험 면제) ①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자격시험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 2학기 이상 정규 등록자

나. 박사학위과정 : 2학기 이상 정규 등록자

2.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 3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해당 학기에 통산 18학점 이상 신청한 자.

(개정 2007.6.14)

나. 박사학위과정 : 5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해당 학기에 통산 30학점 이상 신청한 자.

(개정 2007.6.14)

② 외국어시험은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서 개설된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외국어 과목을 한 학기 이상 B0이상 이수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어학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도 있다. 어학능력시험 점수의 유효기간은 시험일 기준 2년 이내로 제한하며 합격점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자격(TOPIK)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개정 2009.6.3)(일부삭제 2010.10.26)(개정 2013.2.12)(개정 2017.8.17.)

제27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 원서와 수험료를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시기) 대학원의 자격시험의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 매년 3월과 9월

2. 종합시험 : 매년 4월과 10월

제29조(시험위원) 각 대학원장은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에게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험위원을 추천받아 2인 이상 위촉한다. 단, 외국어시험 중 공통영어 및 한국어 과목은 대학원장의 추천을 통해 위촉한다. (개정 2014.8.6.)

제30조(시험과목과 출제범위) 자격시험의 과목과 출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 각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 능력이 각 분야의 연구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의 여부를 시험하는 범위로 한다.

가. 일반대학원 : 박사학위과정(전공영어, 공통영어), 석사학위과정(공통영어)

나.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전공영어)

(개정 2007.10.17.)(일부삭제 2017.8.17.)

2.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로 3과목 이상의 범위에서 출제한다.

나. 박사학위과정 :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연구 방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로 3과목 이상의 범위에서 출제한다.

제31조(채점 및 합격기준) 채점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응시과목 총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2. 종합시험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32조(합격인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결과는 각 대학원장이 채점결과에 의하여 합격 여부를 확정하고 합격자를 공고한다.

제33조(재시험) 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다.(개정 2011.5.31.)

② 종합시험에서 일부 과목만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제6장 학위 청구 논문

제34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 대학원 학칙 제5장에서 제정하는 학위 청구 논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지도교수 및 논문계획서) ① 석·박사과정 학생은 1학기부터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공동 지도교수로 위촉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19.)

② 승인된 논문의 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제목 변경원을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 자격은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분으로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각 대학원장은 위와 동등한 학문적 자격을 갖춘 교내외 인사를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② 논문지도 학생수는 학기별 3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2.12.)

제37조(학위논문중간발표) ①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한 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에서는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 중간발표를 할 수 있다.(개정 2017.2.14.)

② 논문 중간발표는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책임 하에 공개발표로 진행한다.(개정 2017.2.14.)

③ (삭제 2017.2.14.)

제38조(논문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의 질병,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논문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고, 학과(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지도교수를 교체할 때에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수가 본교에 없을 때에는 위의 제36조의 자격을 갖춘 타교의 교수 또는 교외인사로 할 수 있다.(개정 2008.8.12)

제39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08.8.12.)(개정 2015.10.06.)

1. 박사학위과정

가.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

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라. 6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개정 2013.11.04.)

마.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바. 전문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이상에 주저자로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함)

사. 연구윤리교육을 이수 받은 자

2. 석사학위과정

가.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

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라. 4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당해학기에 취득 예정인 자

마. 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 받은 자

제40조(학위청구논문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개정 2010.11.24.)(개정 2015.10.06.)

1. 박사학위과정

-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부.
- 나. 지도교수추천서 1부.
- 다. 학위청구논문 5부.
- 라. 전문학술지 발표논문 각 1부.
- 마.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1부.
- 바. 논문표절검사결과 확인서 1부.
- 사. 기타 필요한 서류.

2. 석사학위과정

-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1부.
- 나. 지도교수추천서 1부.
- 다. 학위청구논문 3부.
- 라.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1부.
- 마. 논문표절검사결과 확인서 1부.
- 바. 기타 필요한 서류.

제41조(논문제출 시한) 학위논문의 제출시한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수료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며 군 의무 복무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논문 제출시한을 넘겼을 경우 학과(전공) 주임교수 및 논문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 제출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6.19.)

제42조(논문 심사위원 선정)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 1.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 2.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3조(심사위원 수와 자격)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이상,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심사위원을 본교 전임교원 이외의 인사로 의뢰할 경우 석사학위 심사위원은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교내·외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고,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한 교내·외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④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된다.

제44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

다.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45조(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구분) ① 각 학위과정의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신설 2017.2.14.)

② 학위논문의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석사학위논문은 1회 이상, 박사학위논문은 2회 이상을 행하며,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병행한다.(신설 2017.2.14.)

③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예비심사 종료 1주일 이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실시한다.(신설 2017.2.14.)

제46조(논문심사의 방법) ① 각 심사위원장은 제출된 논문의 주제, 연구방법, 내용, 연구성과 등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필요에 따라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본, 표본, 기타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2.14.)

제47조(논문심사횟수) (삭제 2017.2.14.)

제48조(논문심사기간) ① 각 학위과정의 학위논문 심사기간은 심사위원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는 예비심사 기간 전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17.2.14.)

제49조(논문심사 판정) 논문의 심사 평가는 구술100점, 논문100점 만점으로 하며,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인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50조(논문 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보완하여 다음 학기에 제출한다.(개정 2010.6.1.)

제51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제52조(논문의 체제) ① 논문의 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종 : 4, 6배판 (19cm × 26cm)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백상지
3. 인쇄방식 : 횡서로 작성하여 인쇄하되, 석·박사 학위논문은 워드프로세싱 명조체 10 ~ 12 point 크기로 한다
4. 표지색상 : 석사학위논문은 흑색, 박사학위논문은 감청색
5. 제본형식 : 클로스 양장
6. 표제인쇄방식 : 별지양식, 신명조체 20 point, 활자 (금색)

7. 속 표제 인쇄방식 : 별지양식
- ②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제지(title page) : 서식 1,2에 따른다.
 2. 백지간지
 3. 속표지 : 서식 3에 따른다.
 4. 제출서 : 서식 4에 따른다.
 5. 인준서 : 서식 5에 따른다.
 6. 논문목차 : 서식 6에 따른다.
 7. 표 및 그림목차(필요시)
 8. 본문(texts)
 9. 참고문헌(references) : 전공별 공인된 것
 10. 초록(abstract) : 서식 7에 따른다.(외국어로 작성)
 11. 부록(supplement)
 12.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

제53조(연구등록 및 논문심사료) 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기 시작 10주 이내에 논문연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등록금의 6%를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개정 2014.8.6.)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 시 소정의 심사료를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

제54조(논문제출부수) 논문 최종 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소정 기일 내에 심사위원의 서명이 날인된 학위논문 4부 및 저작물 이용허락서(소정양식), 학위논문 내용이 저장된 CD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14.)(개정 2010.10.26.)

제7장 학위수여

제55조(목적) 본 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33조 학위수여 및 제35조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한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학위수여 의결) 대학원장은 학위수여대상자를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의결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7조(학위수여) 학위는 본 대학원 학칙 제4조의 <별표1>, <별표2>의 학위종별에 따라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11.24.)

제58조 (학위수여시기) 학위 수여 시기는 년 2회로 한다.

제8장 장학금 · 포상 · 징계

제59조(장학금) ① 각 대학원 장학금의 종류에는 학비보조장학금과 근로장학금 2종류로 구분 지급한다.

② 공무원, 초·중·등교사, 현역군인, 대학 교직원, 학교법인건양학원 직원 및 본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기관,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포상)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1. 학업 및 연구 분야 에서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
2. 선행에 있어서 표창할 만 한 자.

제61조(징계) 대학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의견서와 함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징계한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학업성적이 극히 열등하여 각 과정의 이수가 불가능한 자.
3.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원내 활동에 있어서 면학 질서를 심히 파괴하는 행동을 한 자.
4. 원내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대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게 한 자.

제6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9장 공개강좌

제63조(공개과정명칭) 특수대학원이 설치운영 하는 공개과정은 대학인근 교육수요에 따라 특수 대학원장이 개설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별도로 정한다.

제64조(삭제 2013.11.04.)

제65조(입학자격) 각 특수대학원에서 수강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제66조(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67조(수업일수) 매 학기 수업일수는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6.19.)

제68조(수강과목) 수강과목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하고 필요한 과목을 선택한다.

제69조(학업평가) 출석일수와 과제물 평가로 한다.

제70조(등록) 수강생은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제71조(출석) 수강생은 총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72조(수료증서수여)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서 및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수여 할 수 있다.

제73조(명예수료증서수여) 공개과정을 수료한자의 배우자에게 내조의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명예수료증서를 원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제10장 위탁학생

제74조(입학) ① 정부기관 등 외부 관련기관에서 매 학기 일정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추천, 의뢰 받은 경우 정원 외 입학할 수 있다.

② 군 위탁생은 매년 1~2회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해서 교육인적부장관이 승인한 인원을 정원 외 입학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지원자격) ① 위탁학생의 지원 자격은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② 학군 제휴에 의한 입학 지원 자격은 군 간부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11장 외국인 학생

제76조(입학전형) ① 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②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은 입학지원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

제77조(지원자격) ① 학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각 학위 과정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는 대학원 학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 심사를 통해서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단, 3급 소지자는 재학 중에 4급 이상 취득, 제출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다.(개정 2012.8.20.)

제78조(지원서류) 외국인 학생이 정원 외 석·박사 과정의 입학허가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17.)(개정 2012.8.20.)

1. 입학원서 1부.
2. 4년제 대학성적 및 졸업증명서 각 1부.(한글, 영문이 아닌 경우 번역 공증서 첨부)
3.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영문 또는 한글) 각 1부.
4. 학교장 또는 지도교수추천서 1부.
5. 재정보증인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1부.(US \$10,000 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로 지원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예치)
6. 여권 사본 1부.

7. 한국어능력(TOPIK) 취득 성적표 1부.
8. 기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제79조(외국인등록) ① 각 대학원에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국내 체류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0조(문제 학생에 대한 조치)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학과 주임교수 및 출입국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입학허가 후 또는 매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1조(학칙적용)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0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이전의 대학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폐지하며, 종전 학칙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개정일 이전 경영행정대학원과 국방관리대학원은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시기부터 경영사회복지대학원과 군사경찰행정대학원으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대학원 병원관리학과의 변경된 학위종별(병원경영학석사→보건학석사)은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9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는 2014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9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는 2015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0조(학위청구논문제출)는 2016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장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8조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6조, 제30조는 2017학년도 2학기 외국어시험 응시대상부터 적용한다.